

호주제 바로알기

한국가정법률상담소 www.lawhome.or.kr

호주제는 평등한 가족관계에 위배됩니다

-호주제는 부부의 평등권과 여성의 부모로서의 권리를 침해하는 등 현대판 '삼종지도'로 여성을 남성의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부(父)가에 입적하여야 하고 다른 집으로 입양되거나 혼인 등으로 분가하지 않는 한 아버지의 호적에서 나올 수 없습니다.(민법 제 781조 제 1항). 여성의 경우 혼인하면 부(夫)가에 입적함으로써(민법 제 826조 제3항) 소의 출가의인이 됩니다. 따라서 여성은 혼인 전에는 아버지가 호주인 호적에, 결혼하면 남편이 호주인 호적에 올라야 하는 예속적인 존재로 규정되어 있는 것입니다.

호주제는 우리 이웃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만듭니다

-호주제는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 재혼으로 아버지와 자녀 사이의 성이 다른 가족 등 다양한 가족형태를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자녀는 출생하면서 아버지의 성과 본을 따르고 (민법 제 781조 제1항),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 어머니의 성과 본을 따르게 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부자 동성의 원칙은 아버지의 성을 따르는 가족이 정상적이라는 인식을 심게 되어 어머니 성을 따르는 가족이나 어머니의 재혼으로 부자간의 성이 다르게 된 가족들을 비정상적인 가족으로 보게 합니다. 이는 성의 선택을 인정하고 자녀가 출생하면 부모가 협의하여 자녀의 성을 정할 수 있도록 하는 선진국의 흐름과도 역행되는 것입니다.

호주제는 우리나라의 전통적인 가족제도가 아닙니다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 식민지 시대의 잔재일 뿐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제도입니다.-

1958년 2월 공포된 우리 민법은 입법 당시 근대 정신보다 관습을 많이 반영하게 되었습니다. 즉 호주권을 기반으로 한 가부장적 호주제를 근간으로 하는 일제 시대의 가족제도를 우리의 전통적 가족제도라고 잘못 확신하고 있던 대다수 보수주의 입법자들이 호주제를 채택하였던 것입니다. 이러한 호주제는 제도상 일본에서 유래됐지만 그 채택 이전부터 우리 사회에 존재하고 있던 중국 전래의 종법제도와 결부되어 강력한 가부장제도를 형성하는 요소를 이루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결국 우리 민법상 호주제는 중국의 종법제와 일제가 창조한 군국주의적인 전황제 이데올로기의 소산물인 일본 구민법상 호주제의 영향을 받은 외래적인 제도로 우리 고유의 역사성을 찾아볼 수 없는 것입니다. PPFK

